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67호 2022. 10. 21(금)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2049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 수련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열람 공고- 1
- 남원시 공고 제2022-2053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4
- 남원시 공고 제2022-2060호 도로지정공고-----20
- 남원시 공고 제2022-2062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1
- 남원시 공고 제2022-2063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40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22-2049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 수련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열람 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청소년 수련시설)사업인 『전북학생수련원 모험시설 곡선형짚와이어 확충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열람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10월 21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청소년 수련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전북학생수련원 모험시설 곡선형짚와이어 확충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45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632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전라북도교육감
 - 나.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6.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4)
8.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편입 토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읍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1필지			359,508	632					
1	운봉	공안	산45	임	359,308	632	전라북도 (교육감)				

주민 등의 의견제출서

공 고 명	도시계획시설(청소년 수련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열람 공고	
위 치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산45번지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2022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공고 제2022-2053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조직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수습 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세분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부서 명칭 변경(안 별표 2, 안 별표 5)
-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세분화 (안 별표 6)
 - (현행) 비상 1~2단계 → (개정안) 비상 1~3단계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9. ~ 2022. 11. 1. (14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11월 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70 / 남원시 시청로 60, 의회사무국 건물 4층 안전재난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jjanjjan063@korea.kr), fax(063-620-6747)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안전재난과 자연재난(☎063-620-6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재난과장

1. 개정이유

조직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수습 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세분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부서 명칭 변경(안 별표 2, 안 별표 5)
-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세분화 (안 별표 6)
 - (현행) 비상 1~2단계 → (개정안) 비상 1~3단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19. ~ 11. 01. (14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2022-2053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2.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홍보전산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행정지원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재난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화재·위험물 사고 라.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마.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바.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사.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관련부서 -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정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일자리경제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과 상수도사업소 환경과 환경과 안전재난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관련부서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 - -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일자리경제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17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8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복지과 산림복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지진·화산 시 편성기준 시 편성기준

가. 비상 1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통 제 관	안전건설국장			
담 당 관	안전재난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6+a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재난관리팀장		
	1) 상황관리 총괄반(5명)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 서 직원 2명	
	2)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일자리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행정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소방서

※ 비고(근무방법)

-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대응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통 제 관	안전건설국장			
담 당 관	안전재난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일자리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행정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 한국도로공사 남원도로관리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 국토관리사무소, KT남원지사, 지역자율방재단,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 한국가스 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 비고(근무방법)

-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대응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 3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통 제 관	안전건설국장		
담 당 관	안전재난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a+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황 관리 총 괄 반 (17+a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 난상 황 관 리 팀(6명)	·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 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 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당부서
마) 에너지	· 일자리경제과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행정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 한국도로공사 남원도로관리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 국토관리사무소, KT남원지사, 지역자율방재단,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 한국가스 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
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
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재난 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 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 능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 한국도로공사 남원도로관리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 국토관리사무소, KT남원지사, 지역자율방재단,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 한국가스 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가. 풍수해 (태풍· 호우·대설)	1) 비상 1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 및 화산	1) 비상 1 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 단계	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3 단계	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남원시 공고 제 2022 - 2060 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22- 37	전라북도 고죽동 363	류*근	2022-건축과- 건축신고-246	257	3	841	367-14	0.88	국(재무부)
							367-8	23.45	남원시
							367-12	11.85	남원시
							638	23.57	국(건설부)
							366-2	59.98	국(기획재정부)
							366-1	48.96	박미정
							658	5.92	국(기획재정부)
							365-5	41.37	재단법인고령재단
							365-4	33.0	재단법인고령재단
							365-2	0.45	김영훈
							365-11	184.2	박미정
							365-12	2.31	박미정
							365-1	1.35	박종현
							360-3	40.58	김현옥
							360-1	43.26	이병우
							365	112.03	노정원
							361	55.20	협천이씨제민과
							362	79.92	방태봉
363	49.86	류호근							
389	19.85	신정순							
390	3	국(건설부)							

남원시 공고 제2022 -2062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장기남원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제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단위 명칭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6조의2)

- 자치행정국→행정복지국으로 변경
- 경제농정국→문화산업정책국으로 변경
- 안전건설국→도시안전국으로 변경

나. 실 단위 개편 (안 제4조)

- 1) 기획홍보실 신설 (안 제4조제2항)
- 2) 전략분석실 신설 (안 제4조제3항)

- 국가 및 도 정책분석을 통한 국가예산 발굴, 투자 및 기관 유치

- 3) 시민소통실을 열린소통실로 개편함 (안 제4조제5항)

다. 국 단위 부서 개편(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6조의2)

- 1)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정보화정책과, 교육체육과, 통합복지과, 노인장애인
과, 가정복지과, 열린민원과, 재정과
 - 2) 문화산업정책국: 문화정책과, 신성장산업과, 관광기반과,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 3) 도시안전국: 도시정책과, 시민안전과, 도로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축과
- 라. 사업소 단위 개편 (안 제15조)
- 문화예술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9. ~ 2022. 11. 06.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0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sapssarum@korea.kr), 직접방문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1. 개정이유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장기남원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제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단위 명칭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6조의2)

- 자치행정국→행정복지국으로 변경
- 경제농정국→문화산업정책국으로 변경
- 안전건설국→도시안전국으로 변경

나. 실 단위 개편 (안 제4조)

- 1) 기획홍보실 신설 (안 제4조제2항)
- 2) 전략분석실 신설 (안 제4조제3항)
 - 국가 및 도 정책분석을 통한 국가예산 발굴, 투자 및 기관 유치
- 3) 시민소통실을 열린소통실로 개편함 (안 제4조제5항)

다. 국 단위 부서 개편(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6조의2)

- 1)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정보화정책과, 교육체육과, 통합복지과, 노인장애인 과, 가정복지과, 열린민원과, 재정과
 - 2) 문화산업정책국: 문화정책과, 신성장산업과, 관광기반과, 경제정책과, 농 업정책과, 축산정책과
 - 3) 도시안전국: 도시정책과, 시민안전과, 도로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축과
- 라. 사업소 단위 개편 (안 제15조)

- 문화예술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19. ~ 2022. 11. 06.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을 “행정복지국, 문화산업정책국, 도시안전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을 “기획홍보실, 전략분석실, 감사실, 열린소통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부합동평가 및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2. 통계에 관한 사항
13.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시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략분석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 입법기관, 전라북도와의 업무연락 및 정보수집, 국가 및 광역 예산 확보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정 및 도정 정책분석을 통한 정책전략 수립
3. 기업 및 기관,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4. 기업 등 투자유치 규제애로 해결에 관한 사항

제4조제4항(종전의 제4조제3항) 중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4조제4항) 중 “시민소통실장”을 “열린소통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활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사업집행,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제목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를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정보화정책과, 교육체육과, 통합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열린민원과, 재정과를 둔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8호, 제9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 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장학숙 운영 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경제농정국에 두는 과)”를 “(문화산업정책국에 두는 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문화산업정책국에 문화정책과, 신성장산업과, 관광기반과,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를 둔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농정국장”을 “문화산업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7호, 제9호, 제2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27.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센터 역할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의 제목 “(안전건설국에 두는 과)”를 “(도시안전국에 두는 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정책과, 시민안전과, 도로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축과를 둔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림보호·조성 및 가로조경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한다.
제12조제9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업기반 조성 및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

10. 농업생산 및 농업자재 공급·양정·특작·원예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문화예술사업소

가. 국악의 보존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나. 혼불문학관 등 문학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남원시립공연단(국악단, 합창단, 농악단) 운영관리

라. 문화시설 운영관리

마. 도서관 운영관리

바. 각종 문화예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 공연장 및 음반, 비디오물 유통·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아. 노래연습장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호(종전의 제1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남원예촌 및 주변 시설물 운영관리

자. 백두대간 생태교육전시관 및 관련시설 운영관리

제15조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아.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사용료 체납관리

자. 급수공사 승인 및 시공

차.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카. 상수도 장기개발계획 수립 추진

타. 상수도관 유지관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u>을 둔다.</p>	<p>제3조(국의 설치) ----- ----- <u>행정복지국, 문화산업정책국, 도시안전국</u>-----.</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밑에 <u>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u>을 둔다.</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 -- <u>기획홍보실, 전략분석실, 감사실, 열린소통실</u>----- --.</p>
<p>② <u>기획실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② <u>기획홍보실장</u>----- ---.</p>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삭 제</p>	<p>6. (현행과 같음)</p>
<p>7. <u>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u></p>	<p>7. <삭 제></p>
<p>8. 삭 제</p>	<p>8. (현행과 같음)</p>
<p>9. <u>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센터 역할에 관한 사항</u></p>	<p>9. <삭 제></p>
<p>10. <u>장학숙 운영 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u></p>	<p>10. <삭 제></p>
<p><신 설></p>	<p>11. <u>정부합동평가 및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u></p>
<p><신 설></p>	<p>12. <u>통계에 관한 사항</u></p>
<p><신 설></p>	<p>13. <u>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u></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각종 감사업무 및 공사 등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p> <p>2. <삭 제></p> <p>3.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p> <p>4. <u>정부합동평가 및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u></p> <p>5. <u>통계에 관한 사항</u></p> <p>6. 자치법규 심사·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p>	<p><u>에 관한 사항</u></p> <p>14. <u>시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u></p> <p>③ <u>전략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중앙행정기관, 입법기관, 전라북도와의 업무연락 및 정보수집, 국가 및 광역예산 확보 전략에 관한 사항</u></p> <p>2. <u>국정 및 도정 정책분석을 통한 정책전략 수립</u></p> <p>3. <u>기업 및 기관,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u></p> <p>4. <u>기업 등 투자유치 규제애로 해결에 관한 사항</u></p> <p>④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현행과 동일)</p> <p>2. (현행과 동일)</p> <p>3. (현행과 동일)</p> <p>4. <삭 제></p> <p>5. <삭 제></p> <p>6.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안
<p>7.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p> <p>④ <u>시민소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u></p> <p>2. <u>직소민원실·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u></p> <p>3. <u>생활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u></p> <p>4. <u>소규모 주민숙원사업(사업집행,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u></p> <p>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u>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재정과를 둔다.</u></p> <p>② <u>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2. (생략)</p> <p>3. <u>국내교류에 관한 사항</u></p> <p>4. ~ 7. (생략)</p> <p>8. <u>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u> <u>에 관한 사항</u></p> <p>9. <u>시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u></p>	<p>7. (현행과 동일)</p> <p>⑤ <u>열린소통실장</u>----- -----.</p> <p>1. <u>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u></p> <p>2. <u>생활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u></p> <p>3. <u>소규모 주민숙원사업(사업집행,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u></p> <p>4. <u>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u></p> <p>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u>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정보화정책과, 교육체육과, 통합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열린민원과, 재정과를 둔다.</u></p> <p>② <u>행정복지국장</u>----- -----.</p> <p>1.·2. (현행과 같음)</p> <p>3. <삭 제></p> <p>4. ~ 7. (현행과 같음)</p> <p>8. <삭 제></p> <p>9. <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협조에 관한 사항</u></p> <p>10. ~ 15. (생 략)</p> <p><u>16. 공연장 및 음반·비디오물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u></p> <p><u>17. 노래연습장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u></p> <p>18. ~ 19. (생 략)</p> <p><u>20. 국악의 보존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u></p> <p><u>21. 혼불문학관 관리에 관한 사항</u></p> <p>22. ~ 36. (생 략)</p> <p><u><신 설></u></p> <p>제6조(경제농정국에 두는 과) ① <u>경제농정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u></p> <p>② <u>경제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생 략)</p> <p><u>2.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사항</u></p> <p>3.·5. (생 략)</p> <p><u>6. 농업기반 조성 및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u></p> <p><u>7. 농업생산 및 농업자재 공급·</u></p>	<p>10. ~ 15. (현행과 같음)</p> <p><u>16. <삭 제></u></p> <p><u>17. <삭 제></u></p> <p>18. ~ 19. (현행과 같음)</p> <p><u>20. <삭 제></u></p> <p><u>21. <삭 제></u></p> <p>22. ~ 36. (현행과 같음)</p> <p><u>37. 장학숙 운영 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u></p> <p>제6조(문화산업정책국에 두는 과) ① <u>문화산업정책국에 문화정책과, 신성장산업과, 관광기반과,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를 둔다.</u></p> <p>② <u>문화산업정책국장-----</u></p> <p>-----.</p> <p>1. (현행과 같음)</p> <p><u>2. <삭 제></u></p> <p>3.·5. (현행과 같음)</p> <p><u>6. <삭 제></u></p> <p><u>7. <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u>양정·특작·원예·잠업에 관한 사항</u></p> <p>8. (생 략)</p> <p><u>9. 산림보호·조성 및 가로조경에 관한 사항</u></p> <p>10.·11. 삭 제</p> <p>12. (생 략)</p> <p>13. ~ 23. 삭 제</p> <p><u>24. 허브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25.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6조의2(<u>안전건설국에 두는 과</u>)</p> <p>① <u>안전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u></p> <p>② <u>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 14. (생 략)</p> <p><u><신 설></u></p> <p>제9조(소관사무) ① <u>보건소장·보</u></p>	<p>8. (현행과 같음)</p> <p>9. <u><삭 제></u></p> <p>10.·11.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13.·23. (현행과 같음)</p> <p><u>24. <삭 제></u></p> <p>25. (현행과 같음)</p> <p><u>26.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센터 역할에 관한 사항</u></p> <p><u>27. 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u></p> <p>제6조의2(<u>도시안전국에 두는 과</u>)</p> <p>① <u>도시안전국에 도시정책과, 시민안전과, 도로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축과를 둔다.</u></p> <p>② <u>도시안전국장</u>----- -----.</p> <p>1. ~ 14. (현행과 같음)</p> <p><u>15. 산림보호·조성 및 가로조경에 관한 사항</u></p> <p>제9조(소관사무) ① <u>보건소장·보</u></p>

현 행	개 정 안
<p>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 8.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신설></p>	<p>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소관사무) -----</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농업기반 조성 및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u></p> <p>10. <u>농업생산 및 농업자재 공급·양정·특작·원예에 관한 사항</u></p> <p>제15조(소관사무) -----</p> <p>-----.</p> <p>1. <u>문화예술사업소</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국악의 보존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혼불문학관 등 문학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남원시립공연단(국악단, 합창단, 농악단) 운영관리</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문화시설 운영관리</u></p> <p style="padding-left: 20px;">마. <u>도서관 운영관리</u></p> <p style="padding-left: 20px;">바. <u>각종 문화예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사. <u>공연장 및 음반, 비디오물</u></p>

현 행	개 정 안
<p>1. 관광시설사업소 가. ~ 사. (생 략) <u><신 설></u> <u><신 설></u> 2. 환경사업소 가. ~ 바.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3. 상수도사업소 가. ~ 바.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유통·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u> <u>아. 노래연습장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u> 2. 관광시설사업소 가. ~ 사. (현행과 같음) <u>아. 남원예촌 및 주변 시설물 운영관리</u> <u>자. 백두대간 생태교육전시관 및 관련시설 운영관리</u> 3. 상·하수도사업소 가. ~ 바. (현행과 동일) <u>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u> <u>아.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사용료 체납관리</u> <u>자. 급수공사 승인 및 시공</u> <u>차.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u> <u>카. 상수도 장기개발계획 수립 추진</u> <u>타. 상수도관 유지관리</u> 3. <u><삭 제></u> <u>가. ~ 바.<삭 제></u></p>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20.3.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남원시보건소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 일원
운봉읍보건지소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운봉읍 일원
주천면보건지소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55	주천면 일원
수지면보건지소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35-10	수지면 일원
송동면보건지소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58-1	송동면 일원
금지주생통합보건지소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550	주생면, 금지면 일원
대강면보건지소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63	대강면 일원
대산면보건지소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20	대산면 일원
사매면보건지소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 8	사매면 일원
덕과면보건지소	남원시 덕과면 덕오로 296	덕과면 일원
보절면보건지소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23	보절면 일원
산동면보건지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22	산동면 일원
이백면보건지소	남원시 이백면 과리길 14	이백면 일원
인월면보건지소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인월면 일원
아영면보건지소	남원시 아영면 아백로 384	아영면 일원
산내면보건지소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21	산내면 일원
장교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고남로 103	준향, 장교, 장동, 연동, 권포, 가동
매요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매요길 51	임, 신기, 매요, 가산, 방현
공안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공안길 59	덕산, 수철, 공안, 유평, 용은, 행정, 산덕
덕치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길 387-11	주촌, 가장, 내기, 고촌, 회덕, 노치
하주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고주로 1276	상주, 하주, 배촌, 덕촌, 하송
남창보건진료소	남원시 수지면 남창길 25	남창, 용강, 신평, 초리, 서당, 등동, 가정, 마연
연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송동연산길 1	장포, 영촌, 손동, 연산, 양평, 두곡, 신촌
장국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36	문치, 오촌, 생촌, 원촌, 부석, 태동, 동서내, 안계
도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생면 상도길 20	낙동, 내동, 광촌, 상도, 도산
신월보건진료소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13	택촌, 내기, 상신, 장승, 금평, 황구, 용전, 하도
수흥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수촌2길 6	산촌, 곡촌, 양촌, 수촌, 도곡, 옥전, 택촌, 평촌, 입암
생암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광암길 10	양동, 금탄, 광암, 생사, 신기, 가덕, 방산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대곡보건진료소	남원시 대산면 상대실1길 4	노산, 하대, 상대, 감동, 독산, 신촌, 월계
서도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8	노봉, 수촌, 서촌, 수동, 계동, 인화, 손울, 수월
대율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대율2길 6	화정, 대율, 덕평, 풍촌, 세동
신양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비촌길 105	만동, 도촌, 비촌, 양선, 작소, 사곡, 울천, 월평
용산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덕과로 583	고정, 신정, 덕동, 수촌, 용산, 추산, 배산
사촌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사계로 402	벌촌, 외항, 도촌, 용평, 안평, 사촌, 성남, 성북, 계월
진기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진기금다길 83	개신, 양촌, 음촌, 진목, 내동, 신기, 금계, 다산
부절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361	부동, 부서, 중절
대상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대기대상길 230	대촌, 월산, 대상, 상신
남계보건진료소	남원시 이백면 닭피길 8	내동, 외동, 계산, 남평, 산남, 내기, 강촌
건지보건진료소	남원시 인월면 유곡로 394-5	취암, 동무, 덕실, 외건, 내건, 지산, 유곡, 도장, 성내, 자래, 연실
봉대보건진료소	남원시 아영면 승전로 855	아곡, 당동, 봉대, 외인, 내인, 매산, 서갈, 동갈
반선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로 795	원천, 내령, 부운, 와운, 반선, 덕동, 달궁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업소명	위 치	비 고
문화예술사업소	남원시 시청로 60	
관광시설사업소	남원시 요천로 1447	
상하수도사업소	남원시 오들1길 56	

남원시 공고 제2022 -2063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남원시 조직정비안 마련에 따라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안 제2조제1호 및 같은조제2호)

1) 총 정 원 : 1,167명 → 1,170명 (증 3명)

2) 집행기관의 정원: 1,137명 → 1,140명 (증 3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별표3)

1) 총 계: 1,167명 → 1,170명 (증 3)

2) 일반직 계: 1,117명 → 1,119명 (증 2명)

3) 별정직 계: 1명 → 2명 (증1)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9. ~ 2022. 11. 06.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sapssarum@korea.kr), 직접방문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조직정비안 마련에 따라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안 제2조제1호 및 같은조제2호)

- 1) 총 정 원 : 1,167명 → 1,170명 (증 3명)
- 2) 집행기관의 정원: 1,137명 → 1,140명 (증 3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별표3)

- 1) 총 계: 1,167명 → 1,170명 (증 3)
- 2) 일반직 계: 1,117명 → 1,119명 (증 2명)
- 3) 별정직 계: 1명 → 2명 (증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19. ~ 2022. 11. 06.
 - 결 과:
- 2) 비용추계서: 첨부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167명”을 “1,1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137명”을 “1,14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단위: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70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9	-				
4급	6	4	1	1		
5급	57	26	2	3	3	23
6급 이하 계	1,056	-				
별정직 계	2	-				
6급 상당	1	-				
7급 이하	1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 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총정원: <u>1,167명</u></p> <p>2. 집행기관의 정원 : <u>1,137명</u></p> <p>3.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p> <p>1. -----: <u>1,170명</u></p> <p>2. -----: <u>1,140명</u></p> <p>3. (현행과 같음)</p>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발생분
- 관련조문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소요분
 - 2022년 인건비 34백만원 × 3명
-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세출	인건비	101	103	104	106	108	522

※ 연도별 예산 보수 인상을 1.7% 적용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522백만원(기준인건비 내)

4. 그 밖의 사항

- 부대의견 : 행정안전부 연도별 기준인건비 책정·통보
- 작성자 :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01,502	103,227	104,982	106,767	108,582	525,060
지방세		101,502	103,227	104,982	106,767	108,582	525,060
의존재원							
세 출		101,502	103,227	104,982	106,767	108,582	525,060
인건비		101,502	103,227	104,982	106,767	108,582	525,060
채원 조달		101,502	103,227	104,982	106,767	108,582	525,060
의존 채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101,502	103,227	104,982	106,767	108,582	525,06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